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
----------	----

제출년월일 : 1998. 8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IMF 경제난국의 조기극복을 위한 국가적차원의 총체적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도 자체 조직진단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진단추진위원회』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을 재구성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조직이 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 실·국·본부 및 소속행정기관의 통·폐합운영 계획에 따라 기능을 재배치함은 물론 시대에 맞도록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를 수용, 소속행정기관별로 각각 운영되었던 기구설치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규제·통제부서 기구 조정
 - 국단위 조직인 「감사실」을 과단위 조직인 「감사관」으로 축소
 -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 「자치행정국」으로 업무이관
- 유사중복기능인 「사회복지국」과 「보건환경국」을 통합, 「복지환경국」으로 개편

- 자치시대에 알맞도록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변경
 - 기 획 관 리 실 ⇒ 기획조정실
 - 내 무 국 ⇒ 자치행정국
 - 문 화 관 광 국 ⇒ 문화진흥국
 - 농 촌 진 흥 원 ⇒ 농업기술원
 - 산림환경사업소 ⇒ 산림환경연구소
 - 농축산사업소 ⇒ 축산위생연구소

- 『공업경제국』에 국제협력기능을 보강, 『경제통상국』으로 명칭변경

- 기능유사기구의 통폐합
 - 자연학습원 ⇒ 산림환경연구소로 흡수

□ 근거법령 : 따로붙임

- 지방자치법 제82조, 102조, 103조, 104조, 105조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사무처와 법 제101조 내지 제105조에 의한 충청북도 본청의 행정기구 및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의 범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 ①도의회사무처의 행정기구와 도의회사무처장의 보조기관은 담당관으로 한다.

②본청의 행정기구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또는 실·본부)·과(또는 관·담당관)로 한다.

③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는 국(부)·과로 한다.

④보조기관은 국장(또는 실장, 본부장, 부장), 과장(또는 관, 담당관)으로 한다.

⑤도지사, 부지사, 실·국·본부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감사·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관·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⑥소속행정기관장과 보조·보좌기관장의 직급은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⑧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행정기구와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의회사무기구

제3조(조직) ①도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을 둔다.

②의회사무처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도의회사무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관을 둔다.

④위원회의 의안 사전 검토와 의사 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그 직급 및 직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부지사

제4조(부지사) 충청북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부지사

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나.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2. 정무부지사

가.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나.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다.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라.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마.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바.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본 청

제1절 실·국·본부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농정국, 경제통상국,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군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3.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
4.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5. 도정 주요정책개발·심의·조정
6.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7.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8.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9.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0. 통계의 처리와 유지관리
11. 지역정보화 정책 개발·심의·조정
12. 전산행정 및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전행사의 조정·집행 총괄
2. 인사와 포상 및 예산의 지출, 결산 업무
3.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4. 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정·협의
5. 행정능률 향상,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각종 시험업무
6.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와 기부금품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7. 민방위비상대책,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2. 유통진흥, 소비자보호,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 노사협력, 산업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광업, 에너지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9. 공업화 시책 추진 및 기업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경노복지, 장애인 복지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 가정의례 및 묘지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 조사 사항
5.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6. 보건, 의무, 약무, 정신재활 및 위생에 관한 사항
7. 의료보험, 의료보호,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 8.물관리 종합기획 조정과 수질관리 및 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9.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10.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관리

제10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어민후계자 인력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5. 농지의 보전·이용, 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수축임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8.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추진
9. 양정·양곡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0. 잡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및 화훼에 관한 사항
11. 축산, 수산, 산림에 관한 사항
12.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

제11조(문화진흥국) 문화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
2.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
3. 생활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
4. 건전 청소년 육성
5.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조정
6.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7. 관광지개발 및 관리업무
8. 주택건설, 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
9. 건축문화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육성

제12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면허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
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5.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조사, 복구계획의 수립
6. 하천관리 및 방재대책, 집행
7.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8.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통·운수·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설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 소방공무원교육·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
4.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제2절 실·국·본부외의 행정기구

제14조(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 도 행정사무의 총괄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등을 둘 수 있으며, 과 등의 명칭, 과장 등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직 속 기 관

제1절 옥천전문대학

제15조(설치) ①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옥천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대학은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제16조(학장)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17조(교원)① 대학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등의 교원을 둔다.

②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학생을 교수·연구·지도하며, 조교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 한다.

③ 학장은 전임강사의 임용에 있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감독 및 승인) 학장은 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도지사의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운영) 대학의 학사행정,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지방공무원교육원

제20조(설치) ①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2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관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운영) 교육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농업기술원

제24조(설치) ①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술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25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기술원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2. 농산물의 우량품종 육성 선발과 우량종자의 생산
3.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 및 농산물 저장, 가공이용 연구
4.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 분석, 연구
5.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농업과학기술 보급
6. 농업환경 보전과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7. 농업인 단체의 조직 및 육성

8.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9. 우량 잠종·상묘의 생산 및 시험 검사와 잠건검사용 기계운용 관리
10. 미곡, 맥류, 기타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 보급
11. 중앙정부의 관련 시험연구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7조(특화작목시험장)①기술원에 충청북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명칭·위치 및 그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기술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시험장을 둘수 있으며, 시험장의 설치·명칭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보건환경연구원

제2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보건환경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29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급만성 전염병 진단·식의약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 및 환경측정망 운영, 환경오염물질·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건환경연구원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검사 연구에 관한 사항
4.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제4 및 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포함) 및 보건진료소
 - 나. 상수도 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
 - 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5절 소방서

- 제31조(설치) ①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제5조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 ②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2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며,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사항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4조(파출소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파출소 등을 둘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사 업 소

제1절 개발사업소

제35조(설치) ①지방자치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과 도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이하 “개발사업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개발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6조(소장) 개발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업무) 개발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책사업관련 도 추진사업 기획 및 시행
2. 오송신도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

제2절 도로관리사업소

제38조(설치) ①지방자치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도로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9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과 공사감독
2.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3.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4.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5.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6. 중장비 운영 및 대여관리
7.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보수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관리

제41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산림환경연구소

제42조(설치) ①지방자치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43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
2.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
3.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4.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검정
5.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
6. 산사태 예방 및 복구
7. 휴양림 조성 관리
8.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
9. 자연보호에 관련한 도민연수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 연구

제4절 축산위생연구소

제45조(설치) ①지방자치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축산위생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46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업무)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2.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에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3.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
4.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

제48조(지소)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소들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여성회관

제4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여성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50조(관장)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업무) 여성회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2.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3.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4. 여성 기술인력 양성
5. 각종시설물 대여사업
6.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6절 내수면개발시험장

제52조(설치) ①지방자치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시험장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다.

제53조(장장) 시험장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업무) 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
2. 담수어 종묘생산 보급 및 희귀어종 양식
3. 지역 특성어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
4. 양어기술 지도교육 및 양식 적지 조사
5. 기타 담수어양식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내지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존속기한은 1999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4.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
6.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7.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
8.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
9. 충청북도산림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
10.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
11.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
12.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

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별표 분야란에 “내무”를 “자치”로 “사회복지”를 “복지환경”으로 한다.

②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험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충청북도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무담당관실”을 “법무통계담당관실”로 , 제4조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로, 제6조중 “법무담당관 또는 법무담당관실 소속계장”를 “법무통계담당관 또는 법무통계담당관실 소속담당사무관”로 , 제7조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 ⑥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동조제4항중 “전산통계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제10조제3항중 “전산통계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 ⑦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⑧ 충청북도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내지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⑨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민방위담당간사 : 자치행정국장
제4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⑩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⑪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건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보건계장”을 “예방방역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⑫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과장”으로 한다.
- ⑬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건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과장”으로 한다.
- ⑭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보건과장”으로 한다.

⑰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1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경노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⑱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⑲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보건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공업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⑳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㉑ 충청북도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㉒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청소년계장”을 “청소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㉓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건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㉔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관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농축산사업소 잠업담당관실의 관장사무	농업기술원장(잠사균이시험장)
자연학습원의 관장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자연학습과)

제6조(소속행정기관 설치조례의 통합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립옥천전문대학, 자연학습원, 여성회관, 산림환경사업소등 설치조례중 기관설치에 관한 사항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사무위임 및 위탁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위탁사무의 소관부서는 사무위임·위탁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8조(위탁관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 관리 할수 있다.